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0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0.

발 의 자: 박대출・김상훈・강승규

권영세 • 유용원 • 송석준

구자근 · 김태호 · 이종욱
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,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. 이에 따라 대(對)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,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).

또한,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.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(2019년)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 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,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 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 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「주식・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 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).

법률 제 호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6의2. "외국환중개업무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외국통화의 매매·교환·대여의 중개
 - 나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
 - 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

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"를 "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·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가를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

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일반외국환중개업: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문금융기관등"이라 한다) 간의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
- 2. 대(對)고객외국환중개업: 전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 간의 외국 환중개업무에 관한 영업
-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(이하 "외국환중개회사"라 한다)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업무를 하여야 한다.
-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외국환중개회사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"금융투자업자" 또는 "금융상품판매업자"는 각각 "외국환중개회사"로, "금융투자업" 또는 "금융상품판매업"은 각각 "외국환중개업무"로 본다.
- 1.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44조, 제54조, 제55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
- 2.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 가.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

- 나.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제13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(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리 채권으로 한정한다)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이들을 갈음하여 「주식・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련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등록(「국채법」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
 - ④ 한국은행은 제1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외국 환평형기금채권이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3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유효기간)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- 제3조(외국환중개업무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외국환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제3조(정의) ① -----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략)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6의2. "외국환중개업무"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외국통화의 매매・교환・ 대여의 중개 나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업무 17. ~ 20. (현행과 같음) 17. ~ 20. (생 략)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9조(외국환중개업무 등) ① 다 제9조(외국환중개업무 등) ① 외 음 각 호의 업무(이하 "외국환 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중개업무"라 한다)를 업으로 하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 · 시설 및 전문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

한다.

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

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

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

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

인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

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

고하여야 한다.

- 1. 외국통화의 매매・교환・대

 여의 중개
- 2.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 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
-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 련된 업무

-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증개업 무를 인가받은 자(이하 "외국환 증개회사"라 한다)가 외국환증 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 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 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 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- ③ (생 략)
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 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<u>대통</u>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 다.

- 1. 일반외국환증개업: 외국환거 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 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전문금융기관등" 이라 한다) 간의 외국환증개 업무에 관한 영업
- 2. 대(對)고객외국환증개업: 전

 문금융기관등과 그 밖의 자

 간의 외국환증개업무에 관한

 영업
-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 (이하 "외국환중개회사"라 한 다)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별로 해당 호에서 정 하는 자를 상대로만 외국환중개 업무를 하여야 한다.
- ③ (현행과 같음)
- **4** -----

-----기획

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-----

⑤ (생략)

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 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제39조, 제44조,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"금융투자업업가"는 "외국환중개회사"로, "금융투자업"은 "외국환중개업무"로 본다.

(5) (현행과 같음)

-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증개업무에 관하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및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외국환증개회사의 거래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며,이 경우 "금융투자업자" 또는 "금융상품판매업자"는 각각 "외국환증개회사"로, "금융투자업" 또는 "금융상품판매업자"은 각각 "외국환증개업무"로 본다.
 - 1. 일반외국환중개업의 경우:

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7조부터 제39
 조까지, 제44조, 제54조, 제55
 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
 - 2. 대고객외국환중개업의 경우: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정
 - 가. 전문금융기관등과 외국환중개회사 간의 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
 - <u>나. 전문금융기관등 외의 자</u> 와 외국환중개회사 간의

⑦ (생략)

제13조(외국환평형기금) ① ~ ①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거래: 제1호에 따른 규정과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16조, 제17조,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, 제28조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

(7)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외국환평형기금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한국은행은 제7항의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(원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 한정 한다)의 소유자가 되려는 자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되려는 자의 신청으로 이들을 갈음하여 「주식・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자등록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을 명의인으로 하는 외국 환평형기금 채권의 등록(「국채 법」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

<u>④</u> 한국은행은 제1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명의로 등록된

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이 「주식 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소유자의 명의로 전자등록될 수 있도록 제13항의 등록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 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주식 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제26조를 준 용한다.